#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7517 발의연월일: 2022. 9. 23.

발 의 자:배현진·김성원·서일준

이용호 · 이철규 · 임병헌

정점식 · 정희용 · 조명희

최형두 • 황보승희 의원

(11일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문화재청은 1962년 「문화재보호법」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·예술적·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.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.

그러나, 이제 「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」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 으로 받아들이고,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 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.

이에, 문화유산 · 자연유산 · 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

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,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.

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유산기본법안」(의안 번호 제 17521호), 「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 15호)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 14호), 「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 (의안번호 제17511호), 「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 정법률안 (의안번호 제17520호),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| (의안번호 제17518호), 「문화재보호기금 법 일부개정법률안 (의안번호 제17512호), 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23호), 「역사문화권 정비 등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(의안번호 제17513호), 「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| (의안번호 제17522 호). 「한국전통문화대학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75 1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 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## 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세계유산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중"「문화재보호법」 제19조"를"「국가유산기본법」 제31 조"로 한다.

제10조제5항 전단 중 "「문화재보호법」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(이하 "문화재위원회""를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 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(이하 "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""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 중 "「문화재보호법」 제23조(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"을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23조(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"으로, "지정문화재"를 "지정문화유산"으로, "보호물 또는 보호구역"을 "보호물 또는 보호구역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」 제2조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및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「문화재보호법」"을 "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」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」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」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법률」 및

2. 세계유산 완충구역: 「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13 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 한 법률」 제12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
제13조제3항 전단 중 "문화재위원회"를 "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"로 한다.

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문화재위원회"를 "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원회"로 한다.

제23조제3항 중 "문화재의"를 "국가유산의"로 한다.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1년 후 시행한다.

#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혂 행 개 정 안 제9조(세계유산의 등재 등) ① · 제9조(세계유산의 등재 등) ① · ② (생략) ② (현행과 같음) ③ 세계유산의 유지·관리 및 지원과 제1항에 따른 등재 신청 대상의 선정절차는 「문화재보 ----- 「국가유산 호법」 제19조를 준용한다. 기본법」 제31조----. 제10조(세계유산지구의 지정) ① 제10조(세계유산지구의 지정) ① ~ ④ (생 략)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부터 제3 항까지에 따라 세계유산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할 경우 관계 중 앙행정기관의 장, 관할 시·도 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장 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 ------ 「문화유 하 같다)과 협의한 후 「문화재 보호법」 제8조에 따른 문화재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위원회(이하 "문화재위원회"라 률」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 원회 또는 「자연유산의 보존 한다)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은 기관의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 따른 자연유산위원회(이하 "문 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유산위 원회"---. --하다. ⑥ (생략) ⑥ (현행과 같음)

- 제11조(세계유산지구의 보호) ① 제11조(세계유산지구의 보호) ① 문화재청장이 제10조에 따라 세 계유산지구로 지정 또는 변경한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해 진 것으로 본다.
  - 1. 세계유산 구역: 「문화재보호 1. ----- 「문화유산의 법」 제23조(동산에 속하는 제26조, 제70조에 따른 지정문 화재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 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

2. 세계유산 완충구역: 「문화재」 보호법 | 제13조에 따른 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문화 재보호법」이 아닌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산이 세계유산으 로 등재될 경우에는 해당 법률

-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| 문화재는 제외한다), 제25조, 제23조(동산에 속하는 문화유 산은 ----- 지정문 화유<u>산</u> -------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| 제2조에 따른 천 연기념물등 및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
  - 2. 세계유산 완충구역: 「문화유 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」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역,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| 제12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
  - ② ----- 「문화 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 률」 및 「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| -----

- 의 규정을 적용한다.
- 제13조(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 립·시행) ①·② (생 략)
  - ③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할 경우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야 한다. 이 경우 협의요청을 받 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 시하여야 한다.
  - ④ ~ ⑦ (생 략)
- 제20조(세계유산의 국가관리) ① 문화재청장은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·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세계유산을 직접관리할 수 있다.
  - 1. ~ 3. (생략)
  - ② (생략)
- 제2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·
  - ② (생략)
  - ③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 또 는 시·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

•
제13조(세계유산별 시행계획의 수
립·시행) ①·② (현행과 같
<u>о́</u> )
③
문화유산위원회 또는 자연
<u>유산위원회</u>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제20조(세계유산의 국가관리) ①
문화유산위원회 또는
자연유산위원회
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
제23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·
② (현행과 같음)
③

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	
따라 문화재의 보호・보존・보	<u>국가유산의</u>
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	
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	
등에 위탁할 수 있다.	